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8
----------	------

발의연월일 : 2024. 7. 18.

발의자 : 문대림 · 조국 · 조인철

황정아 · 박홍배 · 윤준병

임미애 · 복기왕 · 윤건영

정진욱 · 정동영 · 오세희

민형배 · 김영호 · 채현일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하 “재배시설”이라 함)은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경우 협의기간이 끝나면 재배시설을 철거하고 농지로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재배시설의 특성상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하여 농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재배시설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및

제36조제1항제5호 삭제).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u>농축산물 생산시설</u>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나. ----- ----- - <u>농축산물 생산시설(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 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작물 재배시설을 포함한다.</u> 이 하 같다)-----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①----- ----- ----- ----- ----- ----- ----- -----

<p>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u>작물재배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한다)</u> 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p> <p>② ~ ⑤ (생략)</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